

#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23
------	-----

제출년월일 : 2006. 3. 20

제 출 자 : 평창군수

## 1. 제정이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방재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조례제정 목적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

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05. 12. 5 ~ 12. 27)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라. 관계부처승인 : 해당 없음

#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회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자연재해대책법 】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약(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